



# '08년도 상반기 지방세관련 개정법령 적용해설

전 동 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서기관

## I. 개 요

'08년 상반기 중에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 · 시행)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 · 시행)으로 지방세 심사청구제도가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면서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8826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支店)의 범위를 수정 · 보완하였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 ·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 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 화물차 · 연안화물선 · 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유가

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하고,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2년 간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였다.

## II.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 해설

### 1. 대도시내 중과대상 지점 등의 범위 보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li> <li>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li> <li>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자장</li> </ol>	<p>제55조의2 (사무소등) ①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li> <li>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li> <li>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li> <li>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자장</li> </ol>

#### (2) 적용사항

’08.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로 과세하도록 한 제도이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의미(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전사적 전산시스템을 구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관련한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제16조[세금계산서]·제32조[영수증]·제33조[납세관리인] 및 제35조[질문·조사]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괄납부제도」에서는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지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서는 납부 이외에 신고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등을 사업장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의 적용요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가)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
② 제조업 외의 업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

(나) 신청 및 승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별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납부방식

구 분	사업장별 신고·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법조문	법 제4조 제1항	법 제4조 제2항	법 제4조 제3항(종전)	법 제4조 제3항 (현행)
사업자 등록	각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	좌 동	좌 동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단일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지점등록말소)
세금 계산서	각 사업장별로 교부	좌 동	좌 동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교부
신고·납부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적용시기	계속	계속	'05.1.1~'07.12.31 적용	'08. 1. 1.0이후 적용

### 사례) 종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판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발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서면인터넷방문 상담3팀-234, 2008. 1. 29)

- 이 해석 사례에 의거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종된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문제는 적용할 수가 없는 사례가 발생됨

## 2.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종과세 완화 (법 제112조)

### (1) 개정사항

## (2) 적용사항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골프장에 대하여 5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설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한다.

여기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설골프장에 대한 지역적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이외의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을 경계로 하여 그 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계지역인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지역내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적용에 있어서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3. 비수도권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영 제131조의2 제3항)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b>제131조의2</b>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p> <p>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제외한다.</p>	<p><b>제131조의2</b>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p> <p>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p>

#### (2) 적용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나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비수도권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완화 (법 제188조)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b>제188조(세율)</b>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u></p> <p>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향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u></p>	<p><b>제188조(세율)</b>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u></p> <p>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향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u></p>

##### (2) 적용사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중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4%)를 적용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도록 하며, 건물분 재산세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동 규정은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의 완화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한정하여 2%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5. 주행세의 탄력세율 적용 (법 제196조의17)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b>제196조의17(세율)</b>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u>1천분의 320</u>으로 한다.</p>	<p><b>제196조의17(세율)</b>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u>1천분의 360</u>으로 한다.</p>

## (2) 적용사항

주행세의 세율은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한 것이며, 이는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주행세 중 자동차세보전액(8,442억원)을 우선 공제후 나머지 잔액을 유류세유가보조금으로 배분되고 있으나, 고유가대책으로 「유가연동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서 주행세 중 유류세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유가보조금과의 배분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류세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유가보조금을 더한 유가보조금 총액(48,419억원) 이상으로 주행세가 징수되면 문제가 없으나, 고유가로 유류소비량이 줄어들어 주행세 세수가 당초 예산액 보다 줄어들 경우 유류세유가연동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면, 농어민 등에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유류세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 없이 예산액 비율로 배분하면, 버스·화물차에 지원되는 유류세유가보조금이 당초 예산액 보다 줄어들게 되어 별도 보전대책 마련 등 문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주행세 인상으로 추가 재원마련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배분 순위는 ①자동차세보전액 ②유류세유가보조금 ③유가연동유가보조금 순으로 배분 우선 순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지자체별 유류세유가보조금 배분율을 국토부에서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1개 부처에서 처리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유가연동유가보조금은 소관부처가 국토부, 농림부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배분율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의 지원 예산비중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총괄하여 지자체별 배분율을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되므로 통합된 지자체별 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주행세의 탄력세율의 결정 (영 제146조14)

### (1) 개정사항

증 전	개 정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으로 한다.	제146조의14(탄력세율) -----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

### (2) 적용사항

주행세의 탄력세율 적용 규정은 공포한 날(2008. 10. 17)부터 시행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7. 주행세의 안분기준 및 방법 (영 제146조의16)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b>제146조의16(안분기준)</b>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p> <p>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li> <li>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li> </ol>	<p><b>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b> ①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li> <li>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li> <li>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li> </ol> <p>②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ath>(8,442억원/12) \times</math> 해당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li> <li>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math>(8,442억원/12)</math>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유류세보조금</li> <li>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군별 유가연동보조금</li> </ol>

### (2) 적용사항

유가연동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탄력세율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 대통령령 제18194호(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 · 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 · 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당해 시 · 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 · 군별 보조금

주행세 안분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보면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 · 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인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또한 주행세 안분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 · 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해당 시 · 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 · 군별 유류세보조금
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 · 군별 유가연동보조금

□ 주행세 세율 구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surtax)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액세)	휘발유 462원/ℓ 경 유 328원/ℓ	×	주행세 [30%:표준세율36%×탄력 세율(±30%)]	→	휘발유 138.6원/ℓ 경 유 98.4원/ℓ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액세」 구조임

※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며, 세율은 「25.2~46.8%」 범위내 결정

□ 주행세 과세체계



□ 주행세 인상 (탄력세율±30→±50%) 시 따른 유가보조금 구조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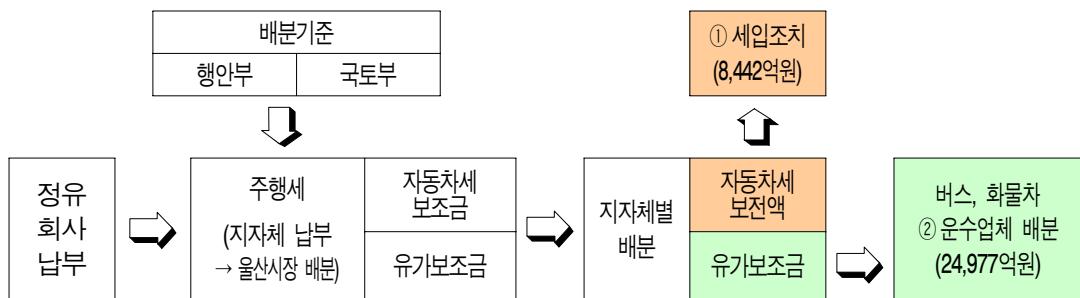
주행세 (33,419억원)		주행세 [48,419억원 = 33,419 + 15,000 ↑ ]		
자동차세 보전액 (8,442)	유류세 유가보조금 (24,977)	자동차세보전액 (8,442)	유류세유가보조금 (24,977)	유가연동유가보조금 (15,000)
시군세입	버스, 화물차 (운수업체) 배분	시군세입	버스, 화물차 (운수업체) 배분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농어민
↓	↓	↓	↓	↓
시군별 승용자동차세 징수액 비율 안분	유류사용량기준 보조금 안분	승용자동차세 징수액비율배분	유류사용량기준 보조금안분	유가 1,800원/ℓ 초과 금액의 50%지원 (배분기준 별도 마련)

※ 자동차세보전액(8,442억원)은 매년 시군세입으로 정액(定額)으로 보전됨

※ 유류세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총액 - 자동차세보전액의 차액으로 잔여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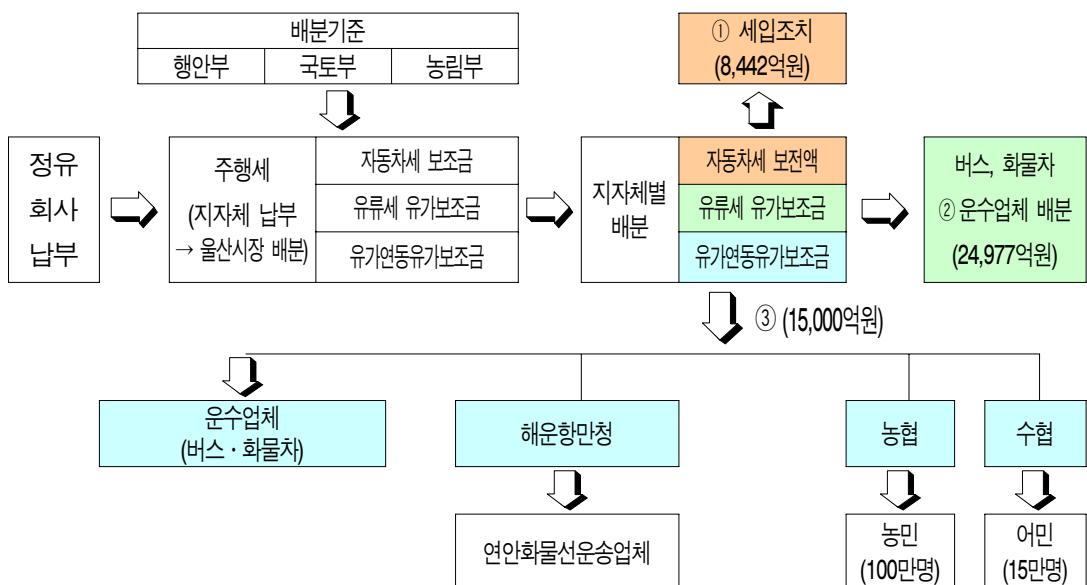
□ 주행세 및 유가보조금 배분체계

1. 유류세 유가보조금의 경우 (인상전)



※ 주행세 배분순서 : ①자동차세보조금 → ②유가보조금 순으로 배분함

2. 유가 연동유가보조금의 경우 (인상후)



※ 주행세 배분순서 : ①자동차세보전액 → ②유류세유가보조금 → ③유기변동유가보조금 순

※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은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농어민에게 각각 보조되는 보조금 예산액 비율로 안분함

※ 버스, 화물차에 대하여는 유류세유가보조금 이외 유가인상시 유기변동유가보조금이 별도로 중복 지원됨

## 8. 토지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대한 범위 보완(영 제137조)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띠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          외한다.</p>	<p>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p>

### (2) 적용사항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바, 그 근거 규정인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그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 철도 · 하천 · 광장 · 공공공지 ·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띠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9. 도시구역내 분리과세 공장의 범위 보완(영 제132조)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p>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③ (생 략)          &lt;신 설&gt;</p>	<p>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p>

### (2) 적용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 · 시행)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10. 등록세 감면대상 법인합병 장려업종개정(행정안전부 고시제2008-40호)

##### (1) 개정사항

당초 (1996.1.5)	조 정				조정후 (2008. 8.)
	계	소멸	통합	분할	
147	△ 10	6	13	9	137

##### (2) 적용사항

1996.1.5자로 고시한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합병장려업종이 소멸, 통합, 분할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07.12, 고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개정한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법인 합병 장려업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내무부 고시 1995 - 65호(1996.1.5)는 폐지한다.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이불솜 제조업에 한함)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장갑 제조업에 한함)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세탁비누 제조업에 한함)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점토벽돌제조업에 한함)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소형트랜스, 각종 코일 계기용 변성기 제조업에 한함)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스피커, 헤드폰 제조업에 한함)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전기지시계기,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한함)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길이계 제조업에 한함)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학요소 (렌즈)제조업에 한함)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전동기 제조업에 한함)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형광등용 안정기 제조업에 한함)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한함)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배전반 제조업에 한함)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가정용 온수보일러에 한함)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화재경보기에 한함)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선박용 내연기관 제조업에 한함)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전기로 제조업에 한함)
29162	승강기 제조업(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품제조업에 한함)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포장기 제조업에 한함)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압연기 제조업에 한함)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에 한함)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금형 제조업에 한함)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차체 제조업에 한함)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부분품에 한함)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부분품에 한함)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기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우산, 양산 제조업에 한함)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유모차, 보온병,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에 한함)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 11.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영 제132조2)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2) 적용사항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12. 심사청구기능의 조세심판원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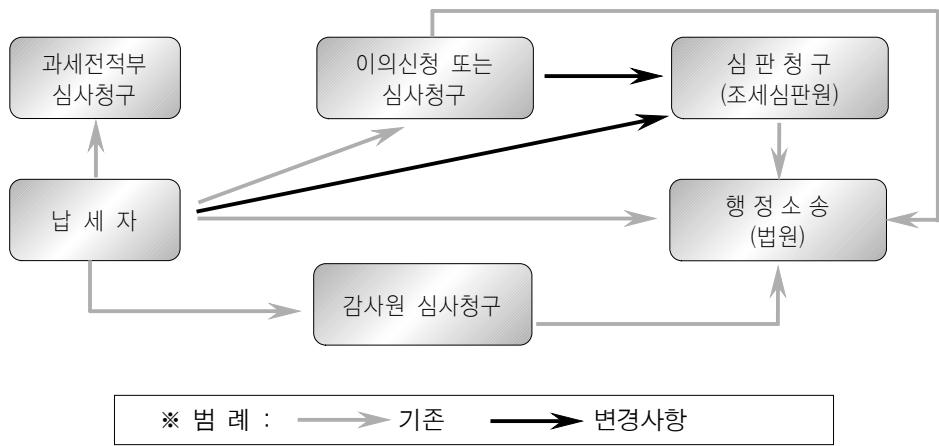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 시·군세 :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 시·군세 :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도세 : 심사청구(행정자치부장관)	○ 도세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2) 적용사항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법」 개정('08.2.29)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 기능이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기관이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었으나 심사청구는 도지사 또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대상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시도세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었으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와는 달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절차 및 임의적 전치주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게 된다.

**지방세 불복절차 흐름도**

**1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조세특례한법 제119조)**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b>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b>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u>2년 이내</u> (개정 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b>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b>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u>4년 이내</u> (개정 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부칙 제42조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개정 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43조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적용사항

### (가) 제120조제3항의 적용범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을 보면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조항에서는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를 보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에 대한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일(창업일)은 개정 전과 동일하나 감면기간 종기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취득세는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본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개정법 부칙 제43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 관련하여 구법의 적용여부에 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단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터 그 취득세 감면기간을 창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정법 제120조제3항 및 부칙 제43조의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당해 기업의 창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같은 논리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기간 연장 적용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20조제3항 본문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

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4년 이내로 과세면제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개정조항(제1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 제43조를 통하여 개정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면제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면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2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함(행안부 도세-179, 2008. 3. 25)

#### 14.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증가산금 산정 변경(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

##### (1)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 (2) 적용사항

2008.1.1이후 이법 시행후 최초 도래하는 증가산금 적용분부터 적용하되, 변경전의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증가산금이 적용된 '08.1월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가. 대상 : '08.1.1자로 증가산금이 산정된 농어촌특별세 체납자료(50~100만원)

나. 적용방법

(가) '08.1월분 증가산금 징수결의를 완료한 자치단체

- 시스템운영자는 해당자료 제공하여 자치단체에서 개별 감액결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증가산금 징수결정결시 징수부 등재처리가 되었음으로 반드시 감액결의

(나) '08.1월분 증가산금 징수결의를 미완료한 자치단체

- 시스템운영자가 증가산금이 산정된 해당 자료를 일괄 감액조치
- ※ 징수부에 증가산금 결의가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일괄 전산감액 처리

### III. 건물시가표준액 개선 조정내용

#### 1. 개 요

건물 과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건물을 통합한 시가를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택이외의 건물(예 :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건물과표를 산정 고시하고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과표는 원가를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시가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일반 건물의 경우 시가보다 높게 과표가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합리적으로 과표운영을 도모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요 조정범위는 기존의 건물 가산율 15%p 하향조정하였으며 가산율 폐지대상은 고층, 대형, 호화내장재, 1급한옥(4종)이고 가산율 축소대상은 특수설비, 특수 건물, 상가 층별가산(3종)이 이에 해당한다.

#### 2. 주요 조정 내용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현 행	조 정
① 특수설비 건축물 ○ 자동승강기	5/100	폐지
○ 7,560Kcal이상의 에어컨	5/100	폐지
○ 빌딩자동화 시설 - 요소 3가지 - 요소 4가지 - 요소 5가지이상	15/100 20/100 25/100	폐지 5/100 10/100
② 고층건물 ○ 11층 ~ 20층건물 ○ 20층초과건물	10/100 15/100	폐지 폐지
③ 992㎡이상의 대형건물	5/100	폐지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현 행	조 정
④ 특수건물 ○ 1개층이 8m이상 ○ 다른층의 2배이상	10/100 20/100	폐지 5/100
⑤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10/100	폐지
⑥ 66㎡ 초과하는 1급 한옥	10/100	폐지
⑦ 4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10/100 5/100	폐지 폐지
⑧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30/100 10/100 5/100	15/100 폐지 폐지
⑨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35/100 10/100 5/100	20/100 폐지 폐지
⑩ 2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40/100 10/100 5/100	25/100 폐지 폐지

